

法務士 金 先 日  
☎ (055)864-3150

# 등기 권리증

①

권리자 서희숙



## 남해법무사

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175-1  
남해초등학교 밑(남해읍교회 옆)  
전화 : (055) 864-3150 번  
863-2473 번  
팩스 : (055) 863-3158 번

# 부동산매매계약서

## 1. 부동산의 표시

1.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04-17      대    331 제곱미터  
 2.    같    은    리    104-87      대    512 제곱미터  
 3.    같    은    리    104-88      대    331 제곱미터
- 서금주 지분 7분의 4 중 7분의 2

검 인
접수번호 : 5338
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검인함.
200 2005. 12. 27
남 해 군 추

부동산의 매매계약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되나,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.

## 2. 계약내용

제1조 위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.  
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.

매 매 대 금	금    육천 오백만	원정 (₩    65,000,000    원정)
계 약 금	금    전액	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매도인은 이를 영수함.
중 도 금	금    없음	원정은 200    년    월    일 지불하며
잔    금	금    없음	원정은 200    년    월    일 지불한다

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0    년    월    일로 한다.  
 제4조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기로 한다.  
 제5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기로 한다.  
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하는 경우 매수인의 매매를 변상하고, 매수인이 위약하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.

특약사항 : ①

2005 12. 29.  
 창원지방법원  
 부동산등기부동산부

0 19307

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매도인, 매수인, 중개인 등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다.

매도인	성 명 서	김    주    조
	주 소	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04-87
	주민등록번호	650910 - 1918811
매수인	성 명 서	김    희    주
	주 소	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88-2
	주민등록번호	581118 - 2918810

051-293-9061  
 011-556-6560 (224)

검신청인인     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175-1      법무사    김    선    일  
 TEL : (055)863-2473, 864-3150  
 부동산을 취득하시고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시면 과태료 징수

접 수	서기	년	월	일
	제			호
등 기 필				

# 등 기 권 리 증



## 법무사이형신사무소

주 소: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246 - 8

전 화: 055) 864-2015

팩 스: 055) 864-8178

※ 취득세 자진납부기간은 잔금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

등 기간을 해태하면 부과액의 20%를 가산납부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

# 부 동 산 매 매 계 약 서

## 1. 부동산의 표시

1.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04-17 대 331 평방미터 →  
 2. 같 은 곳 104-87 대 512 평방미터 →  
 3. 같 은 곳 104-88 대 331 평방미터 →
- 서 영 철 지분 7분의 2 전부  
 - 이 상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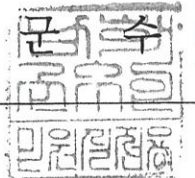
100대 230  
 230  
 검 인

접수번호 : 2432

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 
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 
 검인함

2000. 12. 19

남 해



## 2. 계약내용

- 제 1 조 위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.  
 제 2 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.

매 매 대 금	금 오천일백오십만원 원
계 약 금	금 오천일백오십만원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
중 도 금	금 원은 년 월 일 지불하며
잔 금	금 원은 년 월 일 지불한다.

- 제 3 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년 월 일로 한다.  
 제 4 조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.  
 제 5 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(등기)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키로 한다.  
 제 6 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,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.

특약사항 : ①

18865



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5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한다.

2000년 12월 18 일

매 도 인	성 명	서 영 철	주민등록번호	620116-1918818
	주 소	부산시 남구 문현동 110-18	전 화 번 호	466-9791
매 수 인	성 명	서 공	주민등록번호	650910-1918811
	주 소	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68	전 화 번 호	867-7688


검 인 신 청 인

법 무 사 이 형 신  
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246-8

# 확 인 서 면

부  
동  
산  
의  
표  
시

1.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04-17 대 331 평방미터
  2. 갈 은 곳 104-87 대 512 평방미터
  3. 갈 은 곳 104-88 대 331 평방미터
- 이 상 -

등 기 의 무 자	성 명	서 영 철	등기의 목적
	주 소	부산시 남구 문현동 119-18	소유권이전
	주민등록번호	620116-1918818	
첨부서면	① 주민등록증 사본      ② 운전면허증 사본      ③ 여권사본		
특기사항	키는 173 <sup>cm</sup> 정도며 얼굴이 길고 건강해보임		
우 무 인			

위 첨부서면의 원본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 
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서면을 작성  
하였습니다.

2000 년 12 월 18 일



법 무 사 이 형 신 (인)

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246-8



# 등기필증


권리자 이기덕 이기덕

법무사 이기덕

남해군 남해읍 북면리

175-1번지

# 소유권보존등기신청

접 수	서기 년 월 일			처 리 인	접수	조사	인감	기입	교합	등기필 통지	각종 통지
	재	호	인								
<p>남해군 미조면 피조리 104-17, 104-27, 104-28                      철골및경량철골조 판별처분 신청 권리생활실행                      및 창고, 화장실                      566.22 m<sup>2</sup></p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>이시해 10828</p> <p style="font-size: 2em; font-weight: bold;">등기필</p> </div> </div>											
부 동 산 의				목적 소유권 보존							
신 청 조 항				부동산등기법 제 131조 제 1호							
신 청 인	성명 (상호·명칭)			주민등록번호 (등기용등록번호)		주소 (소재지)			지분		
	서희숙			581118 2918810		남해군 미조면 피조리 28-2			35809 56622		
서금주			650910 7918811		남해군 미조면 피조리 168			20813 56622			

- \* 1.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
2. 신청인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.

창원지방법무사회(동일용사)

(전화번호 - )



# 등기필증

권리자 서금주

법무사 이기덕  
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 
175-1번지



# 매매예약계약서

이

접수번호 2547

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 
제3조의 규정에 따라  
접인함

19 1998. 12. 11

남해군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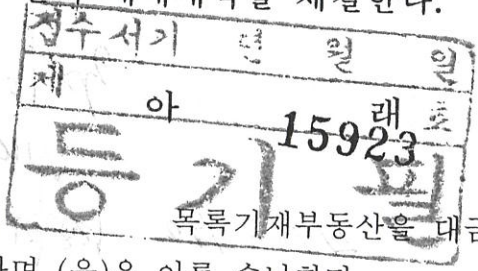
예약 당사자의 표시

예약자(갑) 강봉주

예약권리자(을) 서금주

부동산의 표시 : 부동산 목록과 같다.

예약자 강봉주 를 (갑)이라 칭하고 예약권리자 서금주 를 (을)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한다.



제 1 조 (갑)은 (을)에게 목록 기재부동산을 대금 사천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(을)은 이를 승낙한다.

제 2 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1999. 4. 30. 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(을)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

제 3 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(갑) (을)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(갑)은 (을)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(을)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을)은 (갑)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금 삼천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.

제 5 조 (갑)은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(을)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.

제 6 조 본 예약에 의한 등기신청비용, 등록세등은 (갑)이 부담한다.



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(갑) (을) 쌍방이 기명날인한후 각자 1통을 소지한다.

아래드립니다  
이내에  
과태료 처분을 받게


# 확 인 서 면

등기할 부동산의 표시

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04-17

대 331 평방미터

이 상

등 기  의 무 자	성 명	강 봉 주	등 기 의 목 적
	주 소	부산 서구 서대신동 3가 389-7	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
	주민등록번호	470115 - 1106219	
첨 부 서 면	주민등록증사본, 여권사본,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		
특 기 사 항	얼굴이 각이지고 눈섭이 짙고 머리숱이 많은편임.		
우 무 인			

위 첨부서면의 원본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부동산  
등기법 제 49 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.

1998 년 12 월 2 일

법무사 이 기 덕 (인)



# 등기필증

권리자 서희숙

# 매매예약계약서

예약 당사자의 표시

예약자(갑) **강경주**

예약권리자(을) **서희숙**

검 인
접수번호 <b>2548</b>
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
검인함
1998. 12. 2
남해군

부동산의 표시 : 부동산 목록과 같다.

예약자 **강경주** 를 (갑)이라 칭하고 예약권리자 **서희숙** 를 (을)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한다.

접수서의 연 월 일	대 호
제 <b>15924</b>	
<b>등기권</b>	

제 1 조 (갑)은 (을)에게 **15924** 목록 기재부동산을 대금 **1억**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(을)은 이를 승낙한다.

제 2 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1999 . 4 . 30 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(을)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

제 3 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(갑) (을)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(갑)은 (을)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(을)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을)은 (갑)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금 **구천만**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.

제 5 조 (갑)은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(을)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.

제 6 조 본 예약에 의한 등기신청비용, 등록세등은 (갑)이 부담한다.




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(갑) (을) 쌍방이 기명날인한후 각자 1통을 소지한다.

안려드립니다  
이내에  
양주시민과태료처분을 받겠습니다

# 확 인 서 면

등기할 부동산의 표시

1.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04-87 대 512 평방미터
  2. 같은 곳 104-88 대 331 평방미터
- 이 상

등 기  의 무 자	성 명	강 봉 주	등 기 의 목 적
	주 소	부산 서구 석대신동 3가 389-7	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
	주민등록번호	470115 - 1106219	
첨부서면	주민등록증사본, 여권사본,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		
특기사항	얼굴이 각이지고 눈섭이 짙고 머리숱이 많은편임.		
우 무 인			

위 첨부서면의 원본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부동산  
등기법 제 49 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.

199 8년 12 월 2 일

법무사 이 기 덕 ①

**주민등록증**



성명 **姜鳳周**

주민번호 **470115-11106219**

주소 **부산광역시 중구 중3동 382**

주소 **부산시 서대신동 3가 389-24**

생년월일 **1945. 11. 30**


직업 **부산지철사장**

성	남	나이	64	연령	계	신장	170	체중	74
성명		주민번호		주소		생년월일		직업	



구분	변경내용	일자	의견

특기사항





해 제 증 서

부 동 산 의 표 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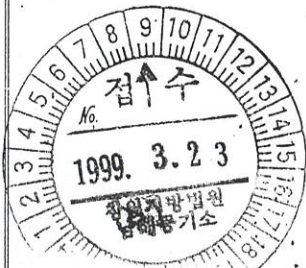
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04-17

대 331 평방미터

이 상

접수서기	년	월	일
제	3697		호
등기필			

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이 서기 1998 년 12 월 2 일  
 접수 제 15923 호로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
 등기를 취득하였던바 이를 해 제 한다.



1999 년 3 월 23 일

가등기관리자 서 금 주  
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68

강 봉 주



해 제 증 서

부동산의 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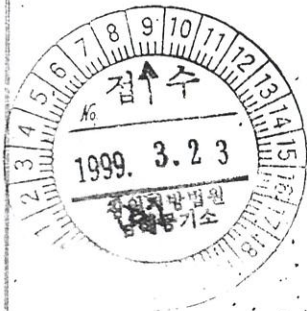
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04-17

대 331 평방미터

이 상

접수서기	년	월	일
제	3697		호
등기필			

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이 서기 1998 년 12 월 2 일  
접수 제 15923 호로서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  
등기를 취득하였던바 이를 해제 한다.



1999 년 3 월 23 일

가등기관리자 서 금 주  
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68

강 봉 주 귀하

등기필

# 등기필증

권리자 서희숙 외 2인

법무사 이기덕

남해군 남해읍 북면리

175-1번지

# 부 동 산 매 대 계 약 서

말미 기재의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도인을 '갑' 매수인을 '을' 이라 편칭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함

1. 매매대금 **총액 74** 원정으로 갑, 을은 정하고 계약당일  
 보증금 조로 금 **34** 원정을 을은 갑에게 지급하고  
 갑은 정히 영수함

1. 잔대금 **총액 40** 원정은 1999. 3. 19 까지 갑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 
 부동산을 을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을은 갑에게 지급할 것이며 이전등기 비용 이외의 제반 부속등기  
 비용은 갑이 부담할것

1. 위 계약을 갑이 위약시에는 잔기 보증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을이 위약시에는 보증금을 상실함으  
 로서 본 계약은 무효로 함

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 당사자 기명 날인하고 본 계약서 3통을 작성  
 '갑' '을' 각 1통씩 소지함

1999. 12. 1

매 매 당 사 자 표 시

매 도 인	성 명	강 봉 주	
	주 소	부산 서구 서대신동 3가 389-17	
	주민등록번호	4470115-1106219	
매 수 인	성 명	홍서희숙	홍서영철
	주 소	부산 미포동 2가 104-17	부산 중구 와룡동 3가 331-17
	주민등록번호	581118 2910810	4712-1 620116 1910810
작 성 자		법무사 김봉홍	

부 동 산 표 시

1.	남해군 미포동 미포리 104-17	지	331.17
2.	남해군 미포동 미포리 104-17	지	512.17
4.	남해군 미포동 미포리 104-17	지	331.17

※ 부동산을 취득하시고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# 확 인 서 면

등기할 부동산의 표시

1. 삼해군 괴조면 괴조리 104-17 대 33/㎡
2.            같은곳 104-17 대 52/㎡
3.            같은곳 104-18 대 33/㎡

등 기  의 무 자	성 명	강봉주	등기의 목적
	주 소	부산. 서구 서대신동 3가 389-7	소유권이전
	주민등록번호	470115 110621P	

첨부서면    주민등록증사본, 여권사본,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

특기사항    신체권장하기 약간증증증증증

우무인



위 첨부서면의 원본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부동산  
등기법 제 49 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.

1999년 3월 22일

법무사

법무사    김봉주  
남해군 남해읍 175-1번지



주민등록증

姜鳳喆

47.0.15 - 11.06.21.9

부산경도정리종 342

부산시서대신동 3가 289 2/1

姜鳳喆

385 1131

부산시서대신동 3가 289 2/1

293071

부산광역시




주민등록증

姜鳳喆

47.0.15 - 11.06.21.9

부산경도정리종 342

부산시서대신동 3가 289 2/1



姜鳳喆

385 1131

부산시서대신동 3가 289 2/1

293071

부산광역시

해 제 증 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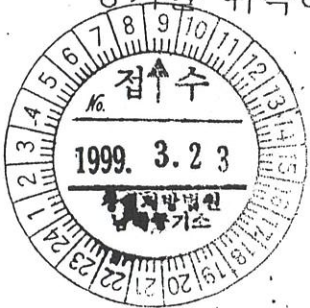
부동산의 표시

- 1.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04-87 대 512 평방미터
- 2. 같은 곳 104-88 대 331 평방미터

이 상

접수서기	년	월	일
제	3696		호
등기필			

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이 서기 1998년년 12월 2 일  
 접수 제15924 호로서 소유권이전등기  
 등기를 취득하였던바 이를 해 제 한다.



1999 년 3 월 23 일  
 가등기권리자 서 회 숙  
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88-2

강 봉 주

등기필

